

1979년 광공업통계조사

# 조 사 요 령 서

( '80 . 5 )



경 제 기 획 원

210.111  
20147

# 목 차

I. 조사개요	3
1. 조사목적	3
2. 조사의 법적근거	3
3. 조사 연혁	4
4. 조사 체계	4
5. 조사 기간	4
6. 조사 범위	4
7. 조사대상 사업체의 결정	8
8. 조사 단위	9
9. 조사 사항	9
10. 조사표의 종류	9
11. 조사 방법	10
12. 집계 및 공표	10
II. 조사담당자의 임무	11
1. 조사용품의 수령	11
2. 사업체명부 보완 및 정리	11
3. 실지조사	12
4. 조사용품의 회수, 제출 및 사후관리	14
5. 질의조치	16

III. 조사표 기입요령	17
1. 일반적 유의사항	17
2. 항목별 기입요령	18
가. 조사표 ( I ) 의 기입요령	18
나. 조사표 ( II ) 의 기입요령	39
IV. 조사표 심사 및 정리요령	41
1. 일반적인 사항	41
2. 항목별 심사요령	41
V. 조사요령서 요약 ( I 표기준 )	46
부록 1. 조사표 ( I ) 의 심사요령도	50
부록 2. 도량형 단위 환산표	52
부록 3. 미국 달러 환산율표	56
부록 4. 주요 공해물질의 법정허용치	57

## I. 조 사 개 요

### 1. 조 사 목 적

광업 및 제조업 부문의 고용, 급여, 생산, 출하, 생산비 및 유형고정 자산등의 사항을 조사하여 동 부문의 수준과 구조변동 및 경제활동 실태를 파악하므로서 동 부문과 관련된 제반 경제정책수립과 시책 효과측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 2. 조사의 법적근거

통계법(법률 제 2799호)에 의한 지정통계 제 17호인  
<통계법초(抄)>

- ① 해당사업체에서는 본 조사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통계법 제4조)
- ② 신고의 명을 받고 신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 또는 신고를 방해한 자, 검사를 거부, 방해 및 기피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공한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통계법 제 17조)
- ③ 본 조사에서 얻어진 자료는 통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이 엄격히 보호된다.(통계법 제 8조)
- ④ 통계목적 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다.(통계법 제 9조)
- ⑤ 통계조사 종사자가 그 직무수행과정에서 지득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도용한 때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통계법 제 17조, 동 18조)

### 3. 조 사 연 혁

가. 광공업 센서스 (지정통제 제 6 호) : 5년주기 (週期)

1955년 제 1 회 실시

1978년 제 8 회 실시

나. 광공업 통계조사 (지정통제 제 17 호) : 1년주기

1967년 제 1 회 조사실시

1979년 제 10 회 조사 실시중

### 4. 조 사 체 계

경제기획원 → 시·도 → 구·시·군 → 동·읍·면 (조사담당) →  
사업체

### 5. 조 사 기 간

가. 조사기준일: 1979. 12. 31일 현재

나. 조사대상기간: 1979. 1. 1일부터 1979. 12. 31일까지 (1개년간)

다. 조사실시기간: 1980. 5. 1 ~ 5. 31 (31일간)

### 6. 조 사 범 위

본 조사의 범위는 「한국 표준산업분류 (제 4 차 개정 75. 12. 3)」 에

다른 대분류 「2」, 「3」에 해당하는 광업 및 제조업(이하 "광공업"이라 함)이다.

#### 가. 광업의 정의

광업은 유기 또는 무기물을 불문하고 천연적으로 산출되는 고체, 액체, 가스등의 광물의 추출, 손질 및 개선 활동을 포함하는 광의로 사용된다.

광업은 지하 또는 지표광산(地表礦山), 채석장 및 유전에서 광물추출 활동과 더불어 광석 및 원재료를 손질하고 개선하기 위한 모든 보조적인 활동 즉 파쇄(破碎), 제질, 세척(洗滌), 선별(選別), 마쇄(磨碎) 부유(浮游), 용해(溶解), 원유토피 및 기타 원재료를 시장에 출하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포함한다.

광상을 개발하고 준비하는 작업과 광물을 시굴하는 작업은 여기서 제외하여 각각 대분류 5(건설업)와 8414(공학, 건축 및 기술서비스업)로 분류하고 특정한 점토, 암석 및 광물을 파쇄, 마쇄 또는 기타 방법으로 처리하는 활동이 광업 또는 채석활동과 연결되어 수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3699(달리 분류되지 않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에 분류한다.

#### 나. 제조업의 정의

제조업이란 무기 또는 유기물질에 기계적 또는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새로운 생산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으로서 그러한 과정이 동력기계를 사용하거나 또는 수공(手工)으로 이루어지거나 공장 또는 가내(家內)에서 수행되거나 또는 생산품이 도매 또는 소매로 판매되는

지의 여부는 불문한다.

※ 광업과 제조업을 일관 작업으로 하고 있거나 겸업(兼業)인 경우에는 최종 출하되는 품목의 출하액 비중에 따라 주산업을 결정한다.

**다. 광공업에 포함되는 업종으로서 유의해야할 업종**

(1) 채석 및 모래, 자갈 채취업

(2) 양복점, 양장점, 양화점

(3) 수탁사업체 : 다른 사업체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아 이를 가공제조하여 준 대가로 가공임(수주가공임)을 받는 사업체

(4) 도정업

도정업체는 임가공료만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산물(사료)수입은 제품으로 조사한다.

(5) 도살업

도살업은 어떠한 업체를 불문하고 임가공료만 조사하며 부산물수입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 역시 임가공료에 포함 조사한다.

(6) 방위(防衛) 산업 사업체

(가) 군(軍)에서 직영하는 사업체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나 군(軍)의 위탁(委託)에 의하여 제조납품하거나 군수품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경우는 모두 제조업이므로 조사대상이 된다.

(나) 군으로부터 원재료 또는 중간제품이나 반제품을 제공받아 제조납품하는 수탁업체라도 조사대상이 된다.

(7) 연초제조창과 담배 원료공장

「담배원료공장」(대부분 판매청에서 개인에게 불하됨)은 조사담

당자가 조사하되, 「연초제조창」은 증양조사(전매청)를 하므로 조사하지 않는다.

(8) 선박의 수리업체

(9) 신문발행업 및 인쇄출판업체(인쇄시설의 유무와는 관계없음)

라. 광공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조사대상의)

(1) 농림수산업과의 관계

(가) 농가, 어가 등에서 자가 채취 또는 재배한 원료를 사용하여 가공 또는 제조하는 경우

(나) 어선내에서 행하는 어류 및 해산물의 식품으로의 가공 또는 제조하는 경우

(다) 벌목업(伐木業)과 단순한 목재 절단업

(2) 건설업과의 관계

조립식 부분품, 완전부품을 토지에 고착화시키는 건설업체(단, 부분품의 제조와 건설업을 일관 작업으로 하고 있는 경우는 부분품의 제조과정만을 분리시켜, 제조업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3) 도·소매업과의 관계

접객시설을 갖추어 놓고 개인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양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체(음식점)

(그러나 접객시설을 갖추고 있어도 주로 도·소매업자 또는 행사인에게 양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체는 제조업으로 본다.)

(4) 수리업 또는 서서비스업과의 관계

주요 가정용구(난로,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의 설비, 가구장치,

자동차, 자전거 및 기타 소비자 물품을 수선하는 사업체 (단, 선확수리는 조사대상)

(5) 보조업종과의 관계

자가발전소, 연구실, 창고, 부속병원, 직영식당 등과 같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에 부수되어 보조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그 주된 산업에 포함시켜 조사한다.

**7. 조사대상 사업체의 결정**

가. 1979. 12. 31 일 현재 국내에 실제 (實在) 하는 사업체 ( 휴업중인 사업체 포함 ) 로서

나. 1979 년 1 년간 조업한 기간중의 평균종업원수 ( 사업주 및 무급가족 종사자 포함 ) 가 5 인 이상인 사업체와 그의 본사 ( 본점 ) 를 대상으로 한다.

다. 따라서 사업체 명부에 등재누락된 사업체도 조사대상이 된다.

라.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1) 군 ( 軍 ) 이 직영하는 사업체

(2) 공공직업보도소 및 교도소의 작업소

( 예 : 갱생원, 재활원 )

(3) 공공단체 및 학교에 속해 있는 실습장, 시험소, 연구소

( 예 : 학교 실습장 )

(4) 비매품 ( 非売品 ) 제조업체

( 예 : 각종 협회보, 종교단체 간행물 등 )

## 8. 조 사 단 위

조사 단위는 공장과 본사 및 광산 등의 사업체(공장)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취급한다.

동일구내(同一構內)에 있더라도 별개의 사업체로 보는 경우:

(1) 단일 경영체에 속하는 몇개의 사업장이 동일한 장소에 있고 출근부와 임금대장 및 재산목록 등 경영장부를 각 공장별로 구분하여 가지고 있으면 별개의 사업체로 본다.

(2) 경영장부를 별개로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원재료 구입액, 제품생산액 및 출하액등을 공장별로 구분하여 조사할 수 있는 경우는 경영장부가 공장별로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별개의 사업체로 취급한다.

## 9. 조 사 사 항

고용, 급여, 출하, 생산비, 유형고정자산, 재무구조, 공해방지시설 등 25개 항목

## 10. 조사표의 종류

가. 사업체용 조사표 [ I ] ~ 본사 이외의 공장, 광산등의 종업원 5인 이상 사업체에 적용한다.

나. 본사용 조사표 [ II ] ~ 종업원 5인이상 사업체의 본사 ( 또는 본점 ) 에 사용하는 조사표로서 본사가 산하사업체와 독립된 장소에 있거

나 같은 장소에 있더라도 장부가 독립되어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 11. 조 사 방 법

조사담당자가 대상 사업체를 방문하여 직접 조사 기입하는 타계식(他計式)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사업체에서 회망할 때에는 자체식(自計式)으로 할수도 있다.

## 12. 집계 및 공표

조사가 완료되어 조사표가 접수되는 대로 내검, 질의조회, 부호기입 등의 과정을 거쳐 기계 집제로 처리한 후 「광공업통계조사 보고서」를 발간 공표한다.

## II. 조사담당자의 임무

### 1. 조사용품의 수령

가. 조사업조의뢰 공문

나. 사업체 명부

다. 조사표류

(1) 조사표〔Ⅰ〕

(2) 조사표〔Ⅱ〕

라. 참고책자

(1) 광공업 통계조사 조사요령서

(2) 산업 및 품목 분류표

마. 기타 조사용품

### 2. 사업체 명부 보완 및 정리

가. 일련번호 부여

(1) 누락 및 신규사업체는 사업체 명부의 최종 번호 다음의 번호를 부여한다.

(2) 1개동이 행정구역변경으로 인하여 2개동으로 분할 되었을 경우는 각 동 별로 사업체 명부를 재작성하여 일련번호를 다시 부여 해야 한다.

(3) 그러나 기존명부에 행정구역 분류 착오로 타조사구 관할 사업체가 등재되어, 이를 당해 조사구로 이기할 경우, 각각 유고(기타) 및 신규 사업체로 간주하여 (1)과 같은 요령으로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나. 1980년도에 신설된 사업체를 신규로 발견한 경우에는 "비교"란에 "1980년 설립"이라고 기재한다. (조사표작성대상은 아님)

다. 사업체 명부의 정리요령은 "광업 및 제조업체 명부 총괄표"(사업체 명부 표지) 후면을 참조한다.

## 3. 실 지 조 사

### 가. 본사에서만 조사가 가능한 사업체

현지 사업체(공장)에서는 조사가 불가능하고 본사 또는 다른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체에서만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우선 가능한 항목까지만 조사한 다음 본사 또는 가능한 사업체에 의뢰작성하여 환송케 한 다음, 해당 사업체(공장)로부터 조사표를 회수한다.

(본사 조사가능사업체를 우선적으로 착수하여 기간내에 회수토록 한다)

### 나. 본사의 조사

(1) 본사가 산하사업체(傘下事業體)와 독립된 장소에 있는 경우 및 같은 장소에 있더라도 관제장부가 독립되어 있는 경우:

본사(또는 본점)..... 조사표(Ⅱ)로서 해당 사항을 조사한다.

(2) 본사가 2개 이상의 산하 사업체를 가지고 있고 그 중 어느 한 사업체와 같은 장소에 있으면서 독립이 안되어 있는 경우:

가) 본사(또는 본점)..... ㉞ 같은 장소에 있는 공장(사업체)

에서 조사표〔Ⅰ〕로서 본사분(7, 10, 11, 12항)을 포함 조사하여야 하며

㊤ 조사표〔Ⅱ〕는 7, 10, 11, 12항을 제외한 항목만 기입한다.

(나) 산하사업체 ……… 본사와 같은 장소에 있는 사업체는 본사분(7, 10, 11, 12항)을 포함하여〔Ⅰ〕표로서 조사한다.

#### 다. 공장별 조사가 불가능한 사업체

공장별 조사가 불가능하여 다른 공장분과의 합산작성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합산된 자료라도 작성이 가능한 곳에서는 합산 조사하되 반드시 조사표의 “조사에 관한 사항”란에 합산 작성된 다른 공장의 사업체명, 소재지, 출하액, 구성비(%) 등을 기입하여 중복집계를 예방한다.

합산된 자료마저 조사가 불가능한 곳에서는 조사가 가능한 본사 또는 다른 공장에 조사표의 작성을 의뢰하여 제출하거나 이미 작성 제출되었을 경우에는 제출된 조사표의 사본을 제출한다.

#### 라. 결산기가 3월이후인 사업체

결산기가 3월이후인 사업체는 조사기간내에 조사가 가능한 것은 결산을 기다려 조사하도록 하고, 조사기간내 작성이 불가능한 사업체는 전기분(연간자료) 결산서에 의거 작성한다. 이 경우는 적요란에 반드시 전기분 결산서에 의거 작성하였음을 주기하여야 한다.

#### 다. 관계장부 또는 서류가 관계기관에 영치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참고가 될 관계서류나 전기분(전년도) 결산서에 의거 작성하고, 적요란에 그 사유를 기입한다.

#### 바. 역대계 채택광산

역대계 채택 광산은 역대 단위로 조사한다. 그러므로 광산조사시는 먼저 역대계 채택여부를 확인한 다음,

- (1) 광업권자인 경우에는 출하액 조사시 직영광산분만을 조사하며,
- (2) 하청업체인 경우에는 직접 출하 하였거나 광업권자에게 인도하였거나 모두 출하로 조사한다.

사. 방위산업 사업체조사

보안상의 문제로 조사의 애로가 발생하면, 조사의 목적과 비밀의 보호를 주시시켜 협조를 구하되 방위산업품목에 한하여 16항 (제품출하액 및 재고액의 품목별 내역)의 제품명란에 「기타」 품목으로 구분하여 기입한다.

아. 응답을 거절하는 경우

응답자가 비협조적이거나 거절할 경우에는 조사의 목적 및 법적근거를 잘 설명하여, 협조를 구하고 계속 거절할 경우에는 소속 구·시·군에 경위와 사유를 보고하여 지시를 받는다.

**4. 조사용품의 회수, 제출 및 사후관리**

가. 조사용품의 회수 및 정리

(1) 등·읍·면

(가) 조사표 회수시 완결된 조사표를 「IV. 조사표심사 및 정리요령」에 의거 오기(誤記), 누락(漏落) 사항이 없는가를 검토하여야 한다.

(나) 조사표는 명부상 일련 번호순으로 칠하고 조사표 표지와 요제표를 작성한다.

(2) 구·시·군

(가) 동, 읍, 면에서 제출한 조사표를 심사하여 불완전한 점이 발견되면 현지 출장 및 <sup>직</sup>질의조회를 통하여 구·시·군에서 직접 보완한다.

(나) 유고 사업체의 유고내용이 타당한지 검토한다. (특히 종업원 50인 이상 사업체)

(다) 동, 읍, 면별 조사표 접수부 및 요계표 총괄표를 작성한다.

(3) 시·도

(가) 구·시·군별 조사표 접수부 및 요계표 총괄표를 작성한다.

(나) 유고 사업체의 유고 내용이 타당한지의 여부를 검토한다. (특히 종업원 100인 이상 업체)

나. 조사용품의 제출 및 사후관리

(1) 중앙에 제출할 조사용품

(가) 조사표 [ I ], [ II ]

(나) 정리된 사업체명부 1부

(다) 요계표(구·시·군·동·읍·면) 및 요계표 총괄표(시·도)

(2) 각급·행정기관에서 보관할 조사용품

(가) 사업체 명부 2부 중 1부는 실지 조사용 명부로 활용한 후 수정보완하여 중앙에 제출하고 잔여 1부는 각 시·도에서 관리 보관한다.

(나) 「산업 및 품목 분류표」와 「행정구역별 부호 및 분류표」는 향후 3~4년간 사용할 예정이므로 보관에 철저를 기한다.

(다) 조사요령서, 조사표등 기타 잔여 조사용품은 향후 1년간 각급 행정기관에 보관하여 문세조사표 질의조회등에 대비한다.

(가) 사업제에서 회수한 「산업 및 품목분류표」는 구·시·군에서  
일괄 보관한다.

#### 5. 질 의 조 회

가. 조사완료되어 제출된 조사표에 대해서는 내용검토후 회수할 예정인  
바 조사에 철저를 기한다.

나. 문제조사표에 대한 질의조회가 있을 경우, 조사담당자는 빠른 시  
일내에 재조사 보완하여 제출한다.

다. 특히 종업원 50인 이상인 문제조사표에 대해서는 구·시·군에서,  
종업원 100인 이상인 문제조사표는 시·도에서 현지 출장하여 보관한다.

### Ⅲ. 조사표 기입요령

#### 1. 일반적 유의사항

가. 조사표상의 「★」란은 기입하지 않는다.

나. 본 조사표는 79. 1. 1~12. 31일의 1년간 자료에 의거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렇지 못할 경우는 직근 1년간의 결산자료에 의한다.

다. 본 조사는 금액 중심의 조사이므로 수량(물량)보다 금액에 우선 순위를 두고 조사하여야 한다.

라. 20여 조사 항목중 특히 출하액, 재고액, 생산비, 재무구조를 중점 조사한다.

마. 제품의 품목 분류는 「산업 및 품목분류표」와 「품목 색인표」를 병용(並用)하면 효과적이다.

바. 조사표는 반드시 흑색이나 청색의 「잉크」나 「블랙」을 사용하며 금액 단위의 각 란에 맞도록 깨끗이 기입하여야 한다.

사. 숫자는 반드시 1, 2, 3.....과 같은 「아라비아」 숫자로 기입하며 기입한 숫자는 혼동되지 않도록 또박 또박 기입한다.

아. 각 수량 및 금액 단위는 정확히 구분하여 기입하며 금액 단위는 백만원이므로 단위 미만은 4사5입 한다(단 13항 생산비론 "만원" 16항 단위당 출하가격은 "원", 11항의 수출액은 "천불", 11항, 17항은 "만원" 단위이므로 유의한다.)

자. 정정하는 경우에는 수정전의 내용을 알아볼 수 있도록 횡선(=)으로 수정한다.

차. 조사표 작성과정에서 어느 항목을 정정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와 관련된 집계란과 항목을 검토 정정하여 상호 연관되는 항목은 반드시 일치되도록 한다.

## 2. 항목별 기입요령

### 가. 조사표 ( I ) 의 기입요령

※ 조사표상의 행정구역분류부호, 일련번호(1), 사업체 고유번호(2)는 사업체 명부상의 번호를 그대로 이기한다.

#### 1 항 : 공장 ( 사업체 ) 명 및 소재지

(1) 공장 ( 사업체 ) 의 명칭이라 함은 공장 ( 사업체 ) 이 영업상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명칭을 말한다.

< 예시 > : 「 한국××공업주식회사 강릉공장 」

「 주식회사××산업 춘천공장 」

(2) 일정한 공장 ( 사업체 ) 명칭이 없을 경우는 대표자 ( 또는 사업주 ) 의 성명만을 기입한다.

(3) 공장 ( 사업체 ) 의 소재지는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실제장소를 말하는 바, ××빌딩, ××상가, ××공단 등을 구체적으로 기입하여야 하며 조사표에 인쇄되어 있는 행정단위 명칭에 “○” 표를 한다 ( ××1동, 2동 명기 )

(4) 전화번호란은 누락시키지 않도록 유의한다.

**2 항 : 본사(본점)명 및 소재지**

(1) 본사가 있으나 사업체와 동일한 장소에 있는 경우 「상등」이라고만 기입한다.

(2) 사업체와 분리되어 있는 것은 사업체명 및 소재지의 기입요령과 같은 요령으로 기입한다.

(3) 덕대제 채택에 의하여 채광되고 있는 덕대 광산은 본사 명칭 및 소재지란에 위와 같은 요령으로 위탁한 광업사업체의 명칭 및 소재지, 전화번호를 기입하되 본사명 좌측 여백에 "덕대"라고 기입하여야 한다.

**3 항 : 동일기업 타공장명 및 소재지**

동일기업의 산하공장(사업체)이 2개 이상 있을 경우에 각각의 공장명 및 소재지를 다음 <예시>와 같은 요령으로 기입하되 난(欄)이 부족할 경우에는 "적요란"을 이용한다.

<예시> "통일산업주식회사"의 산하공장이 부산(본사), 대구, 인천, 광주에 있을 경우의 각 공장에서 본 항목의 기입예시를 보면,

(1) 부산공장에서 기입할 경우

{ 대구공장 : 대구 북구 침산1동 전화 23-1234  
인천공장 : 인천 동구 만석동 전화 7-2538  
광주공장 : 광주 동구 지원동 전화 3-0041

(2) 대구 공장에서 기입할 경우

{ 부산공장 : 부산 중구 광복1가동 전화 22-0401  
인천공장 : 인천 동구 만석동 전화 7-2538

〔광주공장 : 광주 동구 지원동 전화 3-0041〕

(3) 인천, 광주공장에서도 위와 같은 요령으로 기입한다.

**4. 항 : 소속모기업 (그룹) 명**

모기업이란 법적으로는 독립되어 있으나 자본관계 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결합된 2개 이상의 기업중 지도적(지배적) 지위에 있는 기업체를 말하며,

(1) 일반적으로 XX그룹이라 부르기도 하며 <예시 : 1 참조>

(2) XX그룹이라고 불리어지지는 않지만 위의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를 기입한다 <예시 : 2 참조>

<예시 : 1> { 제일모직(주), 삼성전자(주), 전주제지(주) → "삼성"  
(주)금성사, (주)럭키, 금성통신(주) → "럭키"

<예시 : 2> { 동아제약(주), 라미화장품(주), 동명산업(주) → "동아제약(주)"  
화영식품(주), 백화양조(주), 백화산업(주) → "백화양조(주)"

**5. 항 : 창설년월일**

(1) 법인인 경우는 법적 설립년월일을 기입하고 개인사업체인 경우에는 현재의 장소에서 현재의 사업을 시작한 해(年)를 기입한다.

(2) 본사와 떨어져 있는 사업체인 경우는 그 사업체(공장)가 신설된 때를 기입한다.

(3) 업종을 변경한 경우는 업종을 변경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4) 동일 업종으로서 경영주가 상속하여 계승한 사업체는 최초로 창설한 해를 기입한다.

**6항: 조직형태**

- (1) 본 조사에서는 주식회사, 기타법인 및 개인의 셋으로 구분한다.
- (2) 기타법인은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와 민법 및 특수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 (3) 개인에는 법인격(法人格)이 없는 조합과 같은 임의단체(任意団体)도 포함한다.

**7항: 결산기**

결산작업기간(예: 1~12월)이 아니라 회계상 결산마감월(예: 12월)을 말한다.

<예시> 결산이 연1회(결산기간 1월~12월)인 경우와 연2회(결산기간 1~6월, 7~12월)인 경우의 기재방법은 각각(12)월(6, 12)월로 기입한다.

**8항: 자본금 또는 출자금**

- (1) 6항의 조직형태가 기타법인은 없을 수도 있다.
- (2) 1개 회사에 2개 이상의 공장이 있는 경우 각 공장에서는 본사의 자본금을 공장별로 분배하여 기입하지 않고 79.12.31 현재 본사의 남입자본금을 기입한다.

**9항: 부지 및 건물연면적**

- (1) 본 항목은 제조업체에 한하며, 제품생산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일단의 부지와 건물의 연면적을 말하며(사택 및 기숙사와 그 대지, 운동장 포함)

(2) 타인에게 임대해 준 토지와 건물은 제외하나 임차사용분은 포함한다.

(3) 2층 이상의 건물에 2개 이상의 사업체가 있는 경우 부지는 제 1층에 작업장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서 조사하고 건물은 실제 사용중인 연건평을 사업체별로 조사한다.

(4) 복리후생 등에 사용되고 있는 토지와 건물이 생산설비의 부지와 별개의 다른 장소에 위치하고 있거나 일반도로에 의하여 분리되어 있는 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5) 부지면적이 없거나 건물연면적보다 적은 때는 그 타당성을 검토한다(건물이 2층이면 "2층"이라 표시)

#### 10항 : 주요 생산품명 및 생산공정

##### (1) 주요 생산품명

(가) 본 항목은 사업체의 업종을 분류하는데 기준이 되는 것이며, 사업체가 3종류 이상의 제품을 생산할 경우에는 출하액이 큰 순위로 3가지만 선택하여 기입한다.

(나) 수탁제조(임가공)인 경우도 반드시 수탁생산품명(구체적인 품명)을 기입한다.

##### (2) 주요 사용 원재료명

(가) 본 항목의 원재료에 따라 산업분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기입한다.

(나) 주요 사용 원재료부터 3가지만 선택하여 기입한다.

##### (3) 생산공정

생산공정은 주된 품목 하나에 대하여 최초의 투입품명(원재료명)을 기

입)부터 최종적으로 산출되는 품명까지의 순서를 단계적으로 요약 기입한다.

<예시> 벽돌을 제조하는 경우



11항 : 종업원수(외국인은 제외), 월별조업일수 및 노동투입기간

(1) 사업주 및 무급가족 종사자(12월달은 남, 여 구분)

(가) 개인사업체의 소유주(출자자 포함)와 그 가족(동거자 포함)으로서 사업체의 운영을 위하여 1주당 일반적인 작업(경영)시간의  $\frac{1}{3}$  이상 사무나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나 일정한 봉급이나 임금을 받지 않는 자를 말한다.

(나) 6항의 조직형태가 주식회사나 법인은 사업주 및 무급가족 종사자가 없으며 개인사업체는 적어도 1인(人)은 있음에 유의한다.

(2) 파고용자(被雇傭者)

(가) 파고용자에는 장기결근자(3개월이상) 및 군복무자와 위탁제 조식인 경우 수탁사업체의 종업원을 제외한다.

(나) 일고종업원은 연인원으로 조사되기 쉬우므로 연인원일 경우에는 그 달의 조업일수로 나누어 평균종업원수로 기입한다.

<예시> 월중 조업일수를 26일이라 하고 처음 10일간에 20명씩, 그리고 다음 7일간에 15명씩, 나머지 9일간에 30명씩 근무한 경우의 월 평균 종업원수를 구하면,

$$\ast \text{ 평균종업원수} = \frac{\text{월중연근무인원수}}{\text{조업일수}} = \frac{575(\text{명})}{26(\text{일})} \approx 21(\text{명})$$

$$\begin{aligned} \text{월중연근무인원수} &= (10 \text{ 일} \times 20 \text{ 명}) + (7 \text{ 일} \times 15 \text{ 명}) + (9 \text{ 일} \times 30 \text{ 명}) \\ &= 575(\text{명}) \end{aligned}$$

(대) 생산종업원 (12 월 말은 남, 여 구분)

생산에 직결되는 현장 작업에 종사하는 생산종업원을 말한다. 그러나 현장에 종사하더라도 실제로 육체적 작업을 하지 않는 사무원, 지배인, 중역 등은 여기에서 제외한다.

(라) 사무 및 기타 종업원 (12 월 말은 남, 여 구분)

생산종업원 이외의 모든 피고용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생산작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뒤에서 기술적, 전문적, 서기적(書記的)인 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이들의 보조원 즉 급사, 수위, 승용차의 운전사 등을 말하며 법인체에 있어서 보수를 받는 사장, 지배인, 중역 등도 여기에 포함한다.

### (3) 생산종업원 월별 조업일수

(가) 매월별로 그 월(月)에 조업한 일수(日數)를 기입한다.

(나) 79년 1년중 휴업한 월은 휴업표시(△)하고 종업원수는 실제 있어도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종업원수란도 "△"표시 한다.

### 12항 : 연간급여액

(1) 1979년 이전의 급여로서 체불(滯払)된 것을 1979년에 지급한 것은 제외하며 1979년 중에 지급하여야 할 것을 지불치 못했을 경우의 미지급금(未支給金)은 포함한다.

(2) 급여액은 세금·저금·근로조합비 등의 모든 공제액을 공제하기 이전의 금액으로 기입한다.

현물로 지급한 것에 대하여는 지급현물이 자가 생산품일 때에는 지급 시의 공장인도 가격으로, 구입품일 때에는 구입가격으로 환산하여 기입한다.

(3) 급여액이 11항의 종업원수와 비교하여 현실적인 급여수준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 1인당 월별 지급액을 확인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한다.

(4) 종업원 1인당 월 3만원~40만원을 적정기준으로 본다.

(5) 피고용자중 외국인에게 지급한 급여는 제외한다.

**제 13 항 : 연간 주요생산비(금액 단위 : 만원)**

**(1) 원재료비**

(가) 제품의 생산 또는 수리가공을 위하여 1979년 1년간에 실제로 사용한 원재료(주재료)와 부분품, 용기 등과 포장 재료비와 같은 보조재료(부재료)의 사용금액을 말한다.

(나) 그러나 미사용 원재료비가 포함된 구입액을 기입해서는 안된다.

(다) 동일기업 내의 다른 공장(사업체)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원재료(또는 반제품)는 사용 당시의 시가(時價)에 운임을 포함하여 금액을 결정한다.

(라) 광업, 농업, 임업, 수산업 등을 겸營(兼營)하고 있는 사업체에 서 자가취득한 원재료는 사용당시의 시가로 환산기입 한다.

(마) 수탁생산을 하는 경우

① 광공업 사업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탁생산을 하는 경우에 위탁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원재료는 수탁 사업체의 원재료로 계상하지 않고 위탁업체에 계상한다.

② 그러나 광공업 아닌 다른 산업의 사업체(무역업, 판매업, 서비스업 및 건설업등)나 정부 및 공공단체로부터 제품의 생산을 위탁 받은 경우는 제공받은 원재료를, 사용 당시의 시가로 환산하여 수탁업체에서 기입하여야 한다.

### (2) 연료비

(가) 1979년 1년간에 가열로(加熱炉, 난방포함), 동력 및 자가발전용 등으로 사용한 모든 연료비(석탄류, 석유류, 기타 연료등)의 구입가격을 기입한다

(나) 일반적으로 연료로 사용되는 품목이라도 그 사업체에서 원재료로 사용되는 경우는 「원재료비」에 계상한다.

(예 : 연탄공장에서의 무연탄)

### (3) 구입 전력비

(가) 자가발전에 소요된 연료비(석탄, 유류등)는 여기에서 제외하고 「연료비」에 포함한다.

(나) 개인 사업체인 경우 가정소비분과 생산소비분이 각각 구분 가능할 경우에는 생산에 사용된 부분만 조사한다.

### (4) 구입용수비

1979년 1년간에 사무실용과 종업원의 음료용수를 포함한 생산에 사용된 모든 용수의 요금을 기입한다.

### (5) 위탁생산비(·외주가공비)

(가) 출판사에서 원고만을 주고 인쇄소에 인쇄를 시켰을 때에는 인쇄비용은 포함하나 원고를 위한 비용(원고료)은 본 조사에서 「생산비」 항목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나) 수탁 사업체에서 원재료를 모두 조달하여 생산한 후 위탁사업체에 납품할 경우 위탁사업체는 타 사업체(수탁사업체)의 재품을 구입한 것으로 간주해야 하므로 위탁생산비에 제상하지 않는다.

(6) 수리 및 유지비

생산활동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유형고정자산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출된 제비용을 말한다.

(기계, 운할유류, 소모품, 부속품 등)

(가) 공장 증축이나 기계 등의 개조로 그 자산의 성능이 높아지고 가치가 증가됨으로써 회계상 유형고정자산 제정에 처리되어야 할 것은 여기에서 제외하고 17항「유형고정자산 취득」란에 포함 기입한다.

(나) 유실, 도난, 화재 및 막대한 손상으로 유형고정자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이를 구입 대체시킨 경우는 17항「유형고정자산의 취득액과 연간처분 및 손해액」에 기입한다.

**14 항 : 연간 출하액 및 기타 수입액**

본 항목의 금액은 내국소비세액(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 기입한다.

(1) 제품 출하액

(가) 제품 출하액이란 자사(自社)에서 직접 제조생산한 제품(위탁생산품 포함) 중에서 79년 1년간 출하(수출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나) 따라서 외국 또는 타사(他社)에서 구입하여 포장만 변경, 출하한 결산서상의 "상품매출액"은 제외한다.

(다) 제품매출 원가에 판매이익을 포함한 매출금액(매출명세서상 금액)을 기입한다.

(라) 외국에 수출된 제품으로 외화로 판매 계약된 것은 계약 당시의 외환시세에 의하여 원화로 환산 기입한다.

(마) 동일기업 내에 2개 이상의 공장이 있어 각 공장별로 최종완제품을 제조하지 아니하고, 한 공장에서 중간제품을 생산하여 다른 공장으로 보내서 최종 제품을 제조 출하하는 경우

① 중간제품을 생산하는 공장(乙공장)에서는 제조한 생산품은 매출이 아니고 단순히 반출로 취급하기 때문에 금액조사가 어려울지 모르나 본 조사의 개념대로 매출로 간주하여 금액조사를 하여야 하며

② 최종 제품을 출하하는 공장(甲공장)에서는 타공장(乙공장)으로부터 공급 받은 중간제품의 구입비를 피하여 13항 생산비 항목의 (1) 「원재료비」에 포함시켜야 한다.

## (2) 폐품판매액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생기는 폐품, 예를 들면 방직공장의 설사(屑糸), 공장이나 인쇄소에서 나오는 폐지, 불합격품(불량품) 등을 판매한 금액을 기입한다. 본 항목의 폐품은 제품의 생산과정 이외에서 나오는 폐물 즉 파손된 기계 부속품, 사용불능인 책상, 사무용품 등과 혼동하여서는 안된다.

## (3) 수탁제조 및 수리 수입액(修理收入額)

(가) 원재료 또는 중간제품을 타 사업체로부터 공급받아 제조 또는 가공처리하여 준 대가나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물품을 수리하여 준 대가로 받았거나 받아야 할 대금을 말한다.

(나) 광공업이 아닌 다른 산업의 사업체(무역업, 판매업, 서비스업, 건설업)나 정부 및 공공단체로부터 제품생산을 위탁받아 수탁제조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받은 원재료라고 해도 수탁업자 자신이 원재료를 구입하여 생산 출하한 것으로 간주하여 조사한다.

**15 항 : 연초, 연말 재고액**

- (1) 1979년 창설업체는 연초재고액이 있을 수 없다.
- (2) 재고는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16 항 : 연간 제품출하액 및 재고액의 품목별 내역**

본 항목에서는 「14항(1)」 제품출하액과 「15항(2)의㉠」 제품 연말 재고액에 일괄 기입된 총금액을 다시 제품별로 구분 기입한다.

(1) 품목분류번호

(가) 별책 「산업 및 품목분류표」 및 「품목색인표」를 참고한다.

(나) 반드시 8 단위로 기입한다.

(다) 「산업 및 품목분류표」중 대분류 1(9면~12면)에 해당하는 품목번호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라) 같은 품목이라도 원재료, 제품의 용도 및 생산공정에 따라서 「품목분류번호」가 다르므로 이를 유의하여 분류한다.

<예시> { 사카린(식 용) : 31216115      { 의자(나 무) : 33201111  
          " (공업용) : 35111916      { " (금 속) : 38120116

(2) 제품명

(가) 「산업 및 품목분류표」에 수록되지 않은 품목이 있으면 사업체의 사용명칭을 사용하되 제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적요란에 기입하여야 하며 품목분류 번호는 사업체 담당자(또는 생산부서 직원)의 의견을 참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생산제품 종류가 많은 사업체에서는 조사표 16항의 칸이 부족하므로 별지를 사용토록 한다.

(다) 제품분류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체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명칭을 기입하되 가능한 한 구체적인 명칭을 기입한다.

< 예시 > { 가구류 (X) → 장롱, 식탁, 화장대 등으로  
통조림류(X) → 콩치통조림, 고등어통조림, 과일통조림 등으로  
세분 기입

### (3) 단 위

(가) 수량단위는 반드시 「산업 및 품목분류표」에서 지정한 단위를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체의 단위와 서로 달라 지정단위로 환산하는 경우에는 부록의 「단위환산표」에 의하여 그대로 환산하고 수록되지 않은 것은 생산관리부서에 자세한 설명을 들어 정확한 환산이 되도록 한다.

(나) 환산이 극히 어려울 경우에는 사업체의 사용단위로 조사하고 그 단위의 자세한 규격 및 설명을 적요란에 기입한다.

(다) 단위가 「※」인 품목은 금액만 조사하여도 되지만 되도록 수량도 조사 기입하도록 한다(실제 품목분류 착오인 경우 제조사를 방지하기 위함).

(라) 특히 유의할 것은 단위만을 「산업 및 품목분류표」에 지정된 단위로 정정하고 수량은 환산하지 않은채 그대로 놓아두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

< 단위환산 예시 >

① 1본(병)이 190ml인 콜라 219상자(c/s: 24본)를 지정단위(ml)로 환산하면,  $190(\text{ml}) \times 24(\text{본}) \times 219(\text{상자}) = 998,640(\text{ml})$

$1\text{kl} = 1000\text{ℓ} = 1,000,000\text{ml}$  따라서  $998,640(\text{ml}) \div 1,000,000(\text{ml})$   
 $\approx 1(\text{kl})$

② 연탄(22공탄) 5,540장을 지정단위(%)로 환산하면

22공탄 277장 = 1%. 따라서  $5,540(\text{장}) \div 277(\text{장}) = 20(\%)$

### 17항 : 유형고정자산

(1) 유형고정자산이라 함은 토지와 1년 이상의 내구성(耐久性) 있는 건물 및 구축물(構築物), 기계·기구 및 장치·차량·선박 및 운반구 등을 말한다.

(2) 79년도 창설업체는 토지, 건물, 기계, 운반구 등 유형고정자산의 증고, 또는 신규 취득액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러나 임차계약(賃借契約)으로 사용중인 경우는 예외이므로 적요란에 임차상황을 기입한다.

#### (3) 건물 및 구축물

건물은 공장, 사무소, 사택, 기숙사, 기타 부속건물과 승강기(昇降機), 냉방장치, 조명장치, 통풍장치 등과 이들의 부속시설을 말하며 구축물은 도로, 철도, 교량, 담장, 굴뚝, 수조탱크, 조선대(造船台), 송유관, 우물, 조원(造園) 등을 말한다.

#### (4) 기계·기구 및 장치

각종 기계와 반사로, 가열로, 용광로, 분류탑(分溜塔) 및 전도장치(伝導裝置)와 공구·기구·비품 등을 포함한다.

#### (5) 차량·선박 및 운반구

자동차, 철도궤도 등의 육상운반구와 전마선(伝馬船), 화물선, 유조선등

의 해상 운반구 및 항공기 등을 말한다.

(6) 토 지

공장 및 사무소의 대지, 사택대지, 운동장 등을 말하며 이를 위한 토지 개량비 [정지, 매립(埋立) 등의 공사비 및 수익자부담금] 등도 포함한다. 그러나 비업무용 토지는 제외한다.

(7) 취득액(연간)

취득액(연간)이라 함은 1979년 1년간에 유형고정자산을 실질적으로 취득, 설치 및 증개축(增改築)하기 위하여 지출된 모든 비용을 말한다(토지에서는 정지, 매립 등의 공사비 및 수익자 부담금도 포함)

(8) 처분 및 손해액(연간)

1979년 1년간에 매각, 양도(讓渡), 재해, 도난 등으로 인한 유형고정자산의 실질적인 가치감소액을 말하며 감가상각에 의한 장부가액의 감소는 제외한다.

(9) 감가 상각액(연간)

반드시 1979년 당해연도의 감가상각액만 기입하여야 하며 장부상의 감가상각 누계액(累計額)을 기입하여서는 안된다.

(10) 연말 총액

1979. 12. 31 일 현재 장부가액에 의한 미상각 잔액을 말한다.

**18항 : 건설가계정**

(1) 연간증가

1979. 1. 1 ~ 12. 31 일 사이에 건설가계정의 차변에 기록된 금액의 합

계액을 기입한다.

(2) 연간감소

1979. 1. 1 ~ 12. 31 일 사이에 건설가계정에서 고정자산계정으로 대체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입한다.

그러므로 건설가계정 연간감소액은 17항의 「유형고정자산」의 「신규」와 「중고취득액(토지제외)」 합계와 같거나 적어야 한다.

(3) 연간증감 [(1) - (2)] ~~(1) - (2)~~

건설가계정 연간증가에서 건설가계정 연간감소를 차감한 금액을 기입한다. 연간증가액이 연간 감소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연간 증감액 앞에 반드시 "△" 표시를 하고 차액을 기재한다.

다음 I항부터 III항까지는 상공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상공  
시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항목임

**I항 : 기술인력 고용상황**

- (1) 본 항목의 생산종업원은 11항(2)의 ①(생산종업원)의 12월말 제(計)와 일치해야 한다.
- (2) 11항(2)의 ①의 12월말 종업원수가 없을 경우(휴업사업체, 계절적업체등)에는 본 항목을 기입하지 않는다.
- (3) 본 항목내 (4)「기타」는 생산종업원중 기술자, 기능공, 견습공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노무자 등을 말한다.

**II항 : 연간 수출액**

(1) 직접수출

통관기준 F.O.B(본선인도가격)가격으로 하되 거래통화가 미국달러가 아닌 경우에는 (부록 3) "미국달러 환산율표"를 참조하여 "달러화"로 환산기입한다.

(가) 자기명의

수출입업 허가업체가 직접수출 계약을 체결하여 수출한 수출면장 상의 금액을 기입한다.

(나) 위탁수출

자기가 직접 외국상사와 수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수출입업 허가가 없거나 기타사유 때문에 타업체(수출입업 허가업체)에 위탁하여 수출할 경우의 수출 면장(또는 내국신용장)금액을 기입한다.

## (2) 간접수출

"원"화 금액은 484:1 (79년중 "원"화의 미국달러교환율)로 환산하여 "달러"화로 표시한다.

### (가) 내국신용장 수출

자기가 직접 외국상사와 수출계약을 맺지는 않았으나 이미 수출계약을 체결한 국내의 타 수출업체와 물품공급계약을 맺고 내국신용장(제2,3차 내국신용장 포함)에 의거 수출용 제품(반제품 포함)을 공급했을 경우의 공급액 또는 입가공액을 기입한다.

### (나) 입가공 및 기타

① 내국신용장에 의하지 않고 구매승인서와 입가공 및 기타약정에 의거 공급한 수출용 제품(반제품 포함)의 공급액과 입가공액을 기입한다.

② 계약서상 수출용품이 명기되지는 않았으나 자사제품이 수출용품을 공급자가 확신할 수 있을 경우에는 위①항에 준하여 수출품으로 간주하여 기입한다.

## ■ 항목: 재무구조

### (1) 자기자본

(가) 법인의 경우는 결산서(대차대조표)상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을 합한 금액을 기입한다.

(나) 개인기업의 경우는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기입한다.

(대) 위 (나)항의 총자산의 평가기준은 장부가액에 의하고 장부가액이 없을 경우는 79.12.31일 현재와 시가에 의한다.

### (2) 타인자본

(가) 은행차입금

①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79년말 현재 장·단기별 모든 정책자금, 일반자금 및 차관액 등의 차입잔액을 말한다.

② 여기에서 금융기관이라 함은 5개 시중은행(제일은행, 조흥은행, 한일은행, 상업은행, 서울신탁은행), 지방은행, 한국의관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한국주택은행, 한국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과 농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의 신용사업부를 말한다.

따라서 제 2.3 금융권(단자회사, 보험회사, 상호신용금고, 종합금융, 개발금융, 신용협동조합 등에서의 차입금은 제외한다.

(나)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① 외상매입금이란 일반 상거래에서 발생한 매입대금중 79년 12월말 현재의 미지급액을 말한다.

② 지급어음이란 외상매입금에 대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했거나 자기앞의 환어음을 인수했을 경우 발생하는 상업어음이며 이들은 결산서(대차대조표)상의 "유동부채"계정을 참조한다.

(다) 개인사채

자연인, 기업인, 제열회사, 모회사, 기타자금알선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융통한 자금의 잔액을 기입한다.

(라) 기 타

제 2.3 금융권으로 부타의 차입금, 회사채 미상환액, 영업외미지급금등 기타 위에 속하지 않는 모든 채무를 말한다.

**IV. 항 : 연간은행차입액**

(1) 79년 1년동안 금융기관에서 신규로 차입한 장·단기별 정책자금, 일반자금 및 차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액과 상업어음 할인액을 제외한다.

(3) 79년중 차입하여 79년중 기간만으로 상환한 자금도 포함된 금액이다.

(4) 여기에서 금융기관이라함은 포함에서 언급한 바와 같음.

#### V항 : 공해방지시설

##### (1) 공해발생종류

###### (가) 공해기준

공해방지시설의 유무를 불문하고 오염물질이 법정허용치 이상 배출될 경우에 한하며, (부록 4)의 "주요공해물질의 법정허용치"를 참조한다.

###### (나) 수질오염

본 조사에서는 특히 폐유, 각종 유·무기물, 중금속류, 유기용매, 기타 유독물 및 방사성물질 등을 배출하여 자연 수질원을 오염시킬 경우를 말한다.

###### (다) 대기오염

사업장에서 배출한 오염물질(가스, 먼지, 매연)이 그 지역 주민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해당지역의 공중보건상 위해를 미치는 현상을 말한다.

###### (라) 발생종류 표시

⑤를 제외한 ①~④중 2종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각각 2개 이상에 "○" 표시 한다.

##### (2) 공해방지시설

(가) 공해 배출을 방지하거나, 감소시킬 목적으로 설치한 유형고정자산에 속하는 공해방지용 시설물만을 말한다.

(나) 공해방지시설을 갖추어서 법정허용치 미만의 공해가 발생할 경우는 "① 전부 있다"에 분류하고 법정허용치 이상이 계속 발생할 경우에는 "② 일부 있다"에 분류한다.

### (3) 공해방지시설 투자액

(가) 유형고정자산에 속하는 공해방지시설물에 대한 총투자액(79년 12월말까지)을 장부가액에 의하여 기입한다.

따라서 79년 1년간 투자한 금액이 아님에 유의한다.

(나) 79년 12월말 현재 건설중에 있는 시설은 79년말까지 투입된 금액을 기재하며, 공업단지 등에서 공동으로 설치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자사 부담금만 기입한다.

### 범항: 생산형태

(1) 내수용 생산이란 국내에 판매할 목적으로 생산활동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시장 생산은 국내시장의 불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생산이 이루어지는 형태를 말하며

(나) 주문생산은 다른 내수거래 업자나 사용자로부터 주문을 받아 내수용 제품을 생산공급하는 형태이다.

(2) 수출용 생산이란 제품을 직접제조하여 수출하거나 수출업자와 물품공급계약을 맺고 수출용제품을 공급하는 생산형태를 말한다.

나. 조사표(Ⅱ)의 기입요령

※ 일반사항 (12페이지 나, 본사의 조사 참조)

(1) 조사표는 본사를 하나의 사업체로 간주하여 조사하는 것이므로 본사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하여만 기입하며, 장부가 별개로 구분되어 있는 여러개의 산하사업체와 통합되어 있는 경우는 분리하여 기입한다.

(2) Ⅰ항(연간수출액), Ⅱ항(재무구조), Ⅲ항(연간은행 차입액)은 본사에서 모든 산하 사업체분을 합산하여 기입하여야 한다.

(3) 각 항목별 용어의 정의는 조사표(Ⅰ)의 해당 항목과 동일하다.

※ 항목별 기입요령

1항:본사 및 소재지	~조사표(Ⅰ)의 제2항 참조
2항:소속모기업(그룹)명	~조사표(Ⅰ)의 제4항 참조
3항:창 설 년 월 일	~조사표(Ⅰ)의 제5항 참조
4항:결 산 기	~조사표(Ⅰ)의 제7항 참조
5항:조 직 형 태	~조사표(Ⅰ)의 제6항 참조
6항:자본금또는출자금	~조사표(Ⅰ)의 제8항 참조
7항:종업원수 및 연간 급여액(본사분)	

(1) 종업원수

조사표(Ⅰ)의 제11항과 동일.

(2) 연간급여액

조사표(Ⅰ)의 제12항과 동일.

8항:관할사업체 명부 및 사업내용

(1) 경영주체가 동일한 기업체에 소속된 모든 산하 사업체(공장)

를 기입한다.

(2) 경제활동 구분상 광공업 및 광공업과의 겸업인 경우에는 주요  
생산품명란에 반드시 주요 생산품명을 기입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주요  
생산품명란에 해당 경제 활동의 내용을 기입한다.

(3) 「외형매출액과 기타 수입 총액」란은 광공업에 관계없이 산하  
각 사업체별로 1년간 총 수입을 억(億)원 단위로 기입하되 1억(億)  
원 미만은 1억원으로 기입한다.

**10항: 원재료 및 연료재료액(본사분)**

금액은 장부가액에 의한다.

**11. 12항: 유형고정자산, 건설가계정(본사분)**

조사표 [ I ] 의 17. 18항과 동일

**I. II. III항: 연간수출액, 재무구조, 연간은행 차입액**

조사표 [ I ] 의 II. III. IV항과 동일하며 모든 산하사업체(공장) 분을  
합산하여 기입한다.

## IV. 조사표 심사 및 정리요령

### 1. 일반적인 사항

- 가. 사업체별로 정확하게 조사표 ( I , II )를 작성하였는지 검토한다.
- 나. 행정구역별로 사업체명부, 조사표 및 요제표등의 연관되는 사항이 일치되도록 정리되어 있는지 검토한다.
- 다. 연관항목의 계수가 일치하는지, 적과경영사유가 타당한지 검토한다.
- 라. 별첨조사표는 조사표철의 뒷부분에 합철한다.( 광업 및 제조업체명부 총괄표의 ( 주 ) ③항 참조)
- 마.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품목도「산업 및 품목분류표」에 의하여 재검토한다.
- 바. 조사표상의 행정구역분류부호, 일련번호, 사업체고유번호는 사업체명부와 일치시킨다.

### 2. 항목별 심사요령

#### 가. 조사표 ( I )

행정구역분류부호, 일련번호(1), 사업체고유번호(2)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 및 신규업체에 대한 추가번호 부여가 정확하였는지를 검토한다.

1, 2항: 사업체(본사)명 및 소재지

전화번호가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5항 : 창설 년 월 일**

1979년 창설사업체는 15항 연초제고액이 없어야 하며 17항 유형고정자산 취득액이 있어야 한다.

**6항 : 조직형태**

(1) 주식회사와 (2)기타법인중 공법인을 제외한 법인사업체는 8항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있어야 하므로 이의 누락여부를 확인하고 법인사업체는 11항의 사업주 및 무급가족 종사자가 없어야 하며 개인사업체는 이와 반대이다.

**9항 : 부지 및 건물연면적**

부지면적이 없거나 건물연면적보다 작을 때는 타당성을 검토한다. (2층건물은 2층이라 표시)

**10항 : 주요생산품명 및 생산공정**

수탁제조업체도 구체적인 생산품명 및 원재료명이 기입되어야 하므로 누락여부를 검토한다.

**11, 12항 : 종업원수, 월별조업일수 및 노동투입시간, 연간급여액**

(1) 조업일수가 있으면 종업원수 및 노동투입시간이 기입되어 있어야 한다.

(2) 종업원이 있으면 급여액도 기입되어 있어야 하며 종업원 1인당 연간급여액이 사업의 규모 및 종업원수에 비추어 타당한지 검토한다.

**14항 : 연간출하액 및 기타 수입액**

(1) [ 13항 주요생산비 합계 + 12항 연간급여액 합계 > 14항 연간 제품출하액 및 기타수입액 + 15항(2)연말재고액중의 ①과 ②의 합계 - (1)연초 재고액중의 ①과 ②의 합계 ]의 부등식관계가 성립(적자경영) 되는 경우에는 다음사항중 어느 한 항목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므로 그 타당성 여부를 중점확인하고 실제로 적자경영인 사업체는 그 사유를 적요란에 구체적으로 확인 기입한다.

(가) 제품 출하액을 매출원가(제조원가)로 기입하였을 경우(제품수불명세서에 의한 작성)

: 이 경우에는 판매이익이 포함된「제품 매출명세서」에 의하여 제작성하여야 한다.

(나) 원재료비의 중복 산입

: 제품 생산이 다단계 공정을 거치는 경우 단계마다의 원가계산으로 중복 산입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최초투입 원재료비에 추가 재료비만을 포함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다) 겸업일 경우 타산업 부문에 자가사용 또는 타 산업 부문의 비용이 과다일 경우는 가능한 타 산업과 구분조사한다.

(라) 위탁 생산품의 매출액이 누락된 경우는 포함조사 하여야 한다.

(마) 미 사용원재료 재고액을 원재료비에 중복 산입하였을 경우는 미 사용분은 제외시켜야 한다.

(2) 14항의 (1) 제품출하액이 있으면 13항의 (1) 원재료비가 있어야 하므로 없는 경우에는 타당성을 검토한다.

(3) 14항의 (3)수탁제조 및 수리 수입액만 기록되어 있고 16항

의 품목별 제품출하액이 있으면 수탁생산품일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확인하여 수정한다.

**16 항 : 제품출하액 및 재고액의 품목별내역**

(1) 14 항 (1) 및 15 항 (2)의 ①「제품연말 재고액」과 16항(1), (2)의 「품목별 제품출하액 및 재고합계액」과 일치하는지 검토한다.

(2) 품목분류번호 및 수량단위를 「산업 및 품목분류표」와 반드시 일치시켜야 하며, 출하 및 재고의 수량 및 금액이 동일행에 기입되어 있는지 검토한다.

**17 항 : 유형고정자산**

(1) 취득액, 처분 및 손해액, 감가상각액, 연말총액 사이에는 등식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연간 신규 및 중고취득액 (토지제외) 합계는 반드시 제 18항의

(2) 「연간 건설가계정 연간 감소액」보다 커야하므로 그렇지 못할때는 재 검토한다.

**18 항 : 연간건설가계정**

(1) 연간 건설가계정 증가가 (2)연간건설가계정 감소보다 적은 경우에는 (3)건설가계정 연간증감란에 "△" 표시가 되어있는지 검토한다.

**I 항 : 기술인력 고용상황**

본항목의 생산종업원수는 11 항(2)의 ①(생산종업원)의 계(計)와 일치하여야 한다.

**II 항 : 연간 수출액**

본항목의 수출총액은 14항「연간 출하액 및 기타 수입액」과 같거나 적어야 한다.

**Ⅲ항: 재 무 구 조**

(1)의 자기자본은 8항의 자본금과 같거나 커야한다.

**V항: 공 해 방 지 시 설**

본항목 중 (1)공해발생종류의 ⑤에 “○”표 되어 있으면 (2)공해방지 시설과 (3)공해방지 시설투자액이 없는것이 일반적이다.

**나. 조사표 [ Ⅱ ]**

- (1) 조사표 [ Ⅱ ]의 정당사용여부를 검토한다.
- (2) 조사표 [ I ]과 공통되는 항목은 조사표 [ I ]의 심사요령에 준한다.
- (3) 8항 「관할 사업체 명부 및 사업내용」란에 관할사업체별로 적절히 기입되었는지 검토한다.

## V. 조사요령서 요약 ( I 표 기준 )

### ( 1 ) | 조사전반에 관한 사항

1. 조사는 조기에 착수완료 한다.
2. 본 조사는 조사항목이 복잡하므로 되도록 대규모사업체는 자체식, 소규모사업체는 타계식 중심으로 조사하는 것이 편리하다.
3. 본 조사표 작성담당은 사업체의 경리, 또는 기획부서가 된다.
4. 본 조사의 1차 우선순위는 품목별 출하액, 재고액, 생산비, 재무구조 등이며 수량자료보다 금액자료를 우선한다.
5. 본 조사는 종업원 5인이상 광공업체에 대하여 매년 실시하고 있으므로 대부분의 사업체에서는 그 내용을 비교적 잘 알고 있다.
6. 본 조사는 조사단위를 개개 사업체 ( 공장 또는 광업소 ) 로 하고 있으므로 본사에서 신하 사업체분을 작성할때는 각 사업체별로 조사표를 작성해야 한다.
7. 개별 사업체 ( 공장 ) 에서 조사표 작성이 불가능하고 본사에서만이 작성 가능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체로 하여금 조속히 본사에 작성의뢰토록 하여 사업체에서 조사표를 회수한다.
8. 16항의 품목번호 및 수량단위는 반드시 별책「산업 및 품목분류표」에 의한다.
9. 사업체명부상에 등재누락된 사업체도 발굴 조사해야 한다.
10. 유고사업체를 최소한으로 줄인다.

11. 사업체 규모에 따라 비중을 두어 조사한다.
12. 조사표 내용을 수정할 때에는 수정전의 기입내용을 알아 볼 수 있도록 수정한다.

## ( 2 ) 조사표 항목별 기입요령

1. 본 조사항목의 개념과 사업체의 개념이 상이할 경우에는 본 조사 개념에 의하여 작성한다.
2. 조사표상의 행정구역분류부호, 일련번호, 사업체고유번호는 사업체명부와 반드시 일치하도록 기입한다.
3. 금액단위는 각 항목별로 다르므로 「자리수」에 착오가 없도록 하며 단위미만은 4사5입한다.
4. 각 항목별 연관계수가 일치하도록 기입한다.
5. 일고 종업원은 연인원을 기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며 평균 종업원수로 환산 기입한다.
6. 수탁사업체인 경우에는 10항의 주요생산품명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7. 14항 제품출하액 및 기타수입액은 내국소비세액(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등)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므로 이를 확인한다.
8. Ⅳ항 「연간은행차입액」은 79년 1년간에 신규로 차입한 금액임에 유의한다.
9. Ⅵ항 공해방지시설은 유형의 공해방지시설물만을 말한다.

### ( 3 ) 산업 및 품목분류 요령

1. 모든 품목의 분류번호는 8단위로 기입한다.
2. 단위가 「㉔」인 품목은 금액만 조사하여도 되지만 되도록 수량도 조사하도록 한다.(실제 품목분류 착오인 경우 재조사를 방지하기 위함)
3. 수량은 반드시 지정된 단위로 조사하고 규격 또는 품위의 차이가 큰 품목은 가급적 분리하여 기입하며 그 규격 또는 품위를 명시한다.
4. 분류의 일반원칙은 ①원재료 ②성질 ③용도 ④생산과정에 따라 품목분류 번호가 다르므로 유의한다.
5. 품목명을 찾기 어려울 때는 품목명칭을 「가, 나, 다」순으로 배열한 「산업 및 품목분류표」의 부록인 「색인표」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 ( 4 ) 조사표 검토요령

1. 조사누락된 사업체가 있는지 검토한다.
2. 조사누락된 항목이 있는지 검토한다.
3. 각 항목의 연관계수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4. 「Ⅱ. 조사표 심사 및 정리요령」에서 언급한 사항들을 유의하여 검토한다.

(부록 1)

조사표 [ I ] 의

<b>I. 기술인력고용상황</b> 본항의 합계는 11항(2)의 ①계와 일치해야 한다.		<b>1. 공장명 및 소재지</b>	
<b>II. 연간수출액</b> 본항의 합계는 14항(1)보다 적어야 한다.		<b>2. 본사명 및 소재지</b>	<b>3. 동일기업 타공장명 및 소재지</b>
<b>III. 재무구조</b> 총 자본 (1) 자기자본 (2) 타인자본 8항의 자본금 이상이어야 한다.		<b>4. 소속 모기업명 (그 물)</b>	공장명    소재지    전화번호 _____
<b>IV. 연간은행차입액</b> 79년중 신규 차입액에 한함.		<b>5. 창설년월일</b>	79년 창설이면 일반적으로 15항(1) 연초계고액이 없어야 한다. 17항(1), (2)의 취득액이 없어야 한다.
<b>VI. 생산형태</b> 반드시 (1)(2)(3) 중 하나만 ○표 되어야 한다.		<b>V. 공해방지시설</b> (1) ① ② ③ ④ ⑤ (2) ① ② ③ (3)	
<b>적요</b>		<b>6. 조직형태</b> (1) (2) (3) 11항(1)이 없어야 한다.    11항(1)이 있어야 한다.	
<b>조사표작성근거</b> (1) (2) (3)		<b>8. 자본금또는출자금</b> 있어야 한다.    없어야 한다.	
<b>조사에 관한 사항</b> 응답자 소속, 성명, 전화번호 기입이 되어 있어야 한다.		<b>9. 부지및건물면적</b> 일반적으로 부지면적이 건물면적보다 크다	
		<b>10. 주요생산품명 및 생산공정</b> (1) ①                    ②                    ③ (2) ①                    ②                    ③ (3) ①                    ②                    ③	

심사요령도

11. 종업원수, 월별조업일수 및 노동투입시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3)이 있으면 반드시 (2), (4)가 있어야 하며, 12월말은 남·여로 구분되어 있어야 한다.

14. 연간출하액 및 기타 수입액

(1)	
(2)	
(3)	
합계	

12항합계 + 13항합계 > 본항의 합계 + 15항(2)의 ①, ② - 15항(1)의 ①, ②의 관계식이 성립하면 재확인해야 한다.

16. 제품출하액 및 재고액의 품목별내역

제품명	(1) 품목별 제품출하액	(2) 품목별 재고액	(3) 단위 당 출하가격
①	14항의 (1)과 일치해야 한다.	15항 (2)의 ①과 일치해야 한다.	
②			
③			
④			
...			
합계	( )	( )	

12. 연간급여액

- ① 1인당 월3만원미만, 40만원이상이면 재확인
- ②

13. 연간주요생산비

(1)	
(2)	
(3)	
(4)	
...	
합계	

15. 연초연말재고액

	(1) 연초재고액	(2) 연말재고액
①		
②		
③		
④		
합계	( )	( )

17. 유형고정자산

	(1)	(2)	(3)	(4)	(5)
①					
②					
③					
④					
합계					

(1), (2)의 ①~③합계는 18항의 (2)보다 같거나 커야한다.

18. 건설가계정

(1)	(2)	(3)
-----	-----	-----

(부록 2)

도량형 단위 환산표

<길이>

구 분	자(尺)	정(町)	리(里)	미터(m)	인치(in)	피이트(ft)	야아드(yd)	마 일
1 자(尺)	1	0.00277	0.000077	0.30303	11.9305	0.99421	0.331403	0.000188
1 정(町)	360	1	0.02777	109.091	4294.99	357.916	119.304	0.067784
1 리(里)	12960	36	1	3927.27	154.619	12884.9	4295.02	2.44033
1 미터(m)	3.3	0.009166	0.000254	1	39.3707	3.28089	1.09363	0.000621
1 인치(in)	0.083818	0.000232	0.000006	0.025399	1	0.08333	0.02777	0.000015
1 피이트(ft)	1.00582	0.002793	0.00007	0.304788	12	1	0.33333	0.000189
1 야아드(yd)	3.01746	0.008381	0.000232	0.914383	36	3	1	0.000568
1 마 일	5310.73	14752	0.409779	1609.31	63360	5280	1760	1

<붙이>

구 분	제 곱 자 (平方尺)	평 (坪)	제 곱 미 터 (㎡)	제 곱 인 치 (in <sup>2</sup> )	제 곱 피 이 트 (ft <sup>2</sup> )	제 곱 야 야 드 (yd <sup>2</sup> )
1 제 곱 자 (平方尺)	1	0.02777	0.09182	14233	0.98842	0.10982
1 평 (坪)	36	1	3.3057	5123.9	35.583	3.9536
1 제 곱 미 터 (㎡)	10.89	0.3025	1	1550.0	10.763	1.1959
1 제 곱 인 치 (in <sup>2</sup> )	0.007025	0.0001951	0.0006451	1	0.006944	0.0007716
1 제 곱 피 이 트 (ft <sup>2</sup> )	1.0117	0.02810	0.09290	144	1	0.11111
1 제 곱 야 야 드 (yd <sup>2</sup> )	9.1054	0.25292	0.83612	1296	9	1

< 무게 >

구 분	돈 ( 匁 )	관 ( 貫 )	근 ( 斤 )	그램 ( g )	온스 ( OZ )	파운드(Lb)	톤 ( ton )
1 돈 ( 匁 )	1	0.001	0.00625	3.75	0.132277	0.008267	0.000004
1 관 ( 貫 )	1000	1	6.25	3.750	132.277	8.2672	0.00375
1 근 ( 斤 )	160	0.16	1	600	21.1647	1.32279	0.0006
1 그 램 ( g )	0.26666	0.000266	0.001666	1	0.035273	0.002204	0.000001
1 온 스 ( OZ )	7.55984	0.007559	0.047249	28.3495	1	0.0625	0.000028
1 파 운 드 ( Lb )	120.958	0.120958	0.755988	453.592	16	1	0.00045
1 톤 ( ton )	266.666	266.666	1666.6	1000000	35.273	2224.59	1

<부피>

구 분	홉(合)	되(升)	말(斗)	섬(石)	입방미터 (㎥)	리터(ℓ)	갈롱(英)	갈롱(美)
1 홉(合)	1	0.1	0.01	0.001	0.00018	0.18039	0.039682	0.047656
1 되(升)	10	1	0.1	0.01	0.001803	1.8039	0.396805	0.476567
1 말(斗)	100	10	1	0.1	0.018039	18.039	3.96808	4.76567
1 섬(石)	1000	100	10	1	0.18039	180.39	39.6808	47.6567
1 입방미터(㎥)	554352	554352	554352	554352	1	1000	219.972	264.1866
1 리터(ℓ)	5.54352	0.55435	0.05543	0.00554	0.001	1	0.219971	0.264186
1 갈롱(英)	25.2006	2.52006	0.2520	0.0252	0.004545	4.54596	1	1.201
1 갈롱(美)	20.9833	2.09833	0.20983	0.020983	0.003785	3.78543	0.832639	1

(부록 3)

미 국 달 러 환 산 율 표

(1979년의 매월말 집중 기준율의 평균치임)

나라명 및 화폐단위		교 환 율	나라명 및 화폐단위		교 환 율
영 국	1 파 운 드	2. 1339	벨 기 에	1 벨기에프랑	0. 0342
서 독	1 마 르 크	0. 5492	오 스트리아	1 오스트리아실링	0. 0731
카 나 다	1 카나다달러	0. 8549	노 르 웨 이	1 노르웨이크로네	0. 1980
프 랑 스	1 프랑스프랑	0. 2360	네 델 란 드	1 길 다	0. 5006
이 탈 리 아	100 리 라	0. 1206	사우디아라비아	1 리 알	0. 2970
스 위 스	1 스위스프랑	0. 6025	쿠 웨 이 트	1 쿠웨이트디나르	2. 6173
홍 콩	1 홍콩 달러	0. 2012	바 레 인	1 바레인디나르	2. 6214
스 웨 덴	1 스웨덴크로나	0. 2337	아랍토후국연방	1 디 햄	0. 2626
호 주	1 호주 달러	1. 1166	일 본	100 엔	0. 4532
덴 마 크	1 덴마크크로나	0. 1902			

(부록 4)

## 주요 공해물질의 법정허용치(예)

대 기 오 염		수 질 오 염	
암 모 니 아	250 ppm 이하	수 소 이 온 농 도	5.8 ~ 8.6
일 산 화 탄 소	400 "	온 도 (°C)	40° 이하
염 화 수 소	25 "	화학적산소요구량(mg/l)	150 이하
염 소	10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200 "
황 산 화 물(SO <sub>2</sub> 로서)	1800 "	부 유 물 질 량(%)	150 "
질 소 산 화 물(NO <sub>x</sub> 로서)	250 "	노말핵심추출물질함유량(%)	
이 황 화 탄 소	120 "	광 유 류	5 이하
포 립 알 데 히 드	50 "	동 식 물 유 지 류	30 "
황 하 수 소	30 "	페 놀 류 함 유 량 (%)	5 "
불 소 화 합 물 ( F 로서)	10 "	시 안 " (%)	1 "
카드뮴화합물 ( Cd 로서)	1.0mg/Nm <sup>3</sup> 이하	크 롬 " (%)	2 "
연 화 합 물 (Pb 로서)	30 "	동 " (%)	3 "
시 안 화 합 물 (CN 로서)	10 ppm 이하	카 드 뮴 " (%)	0.1 "
크롬화합물 ( Cr 로서)	1.0mg/Nm <sup>3</sup> 이하	알 킬 수 은 " (%)	검출되어서는안됨
동 화 합 물 ( Cu 로서)	30 "	수 은 " (%)	"
페놀화합물 (C <sub>6</sub> H <sub>5</sub> OH로서)	10 ppm이하	유 기 인 " (%)	1 이하
비소화합물 (As 로서)	3 "	비 소 " (%)	0.5 "
먼 지	500 mg / Nm <sup>3</sup>	연 " (%)	1 "
검 색	링겐만비탁표 2 도 이 하	6 카크롬 " (%)	0.5 "
		용해성망간 " (%)	10 "
		불 소 " (%)	15 "
		P C B " (%)	0.003 "